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7 (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1. 27(월)

다. 상정일자 : 2006. 12. 5(화)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 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반회계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기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안 부칙 제2항)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안 부칙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장학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기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평창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97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근거를 마련 후 출연토록 시정 처분되어 '98년 12월 「평창군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나 "군출현 장학기금"과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자산"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인 직접 출연하도록 하여 자산을 일원화하고,
- 당초 기금조성의 목표액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므로 지역인재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 기금조성의 목표액의 상향과 관련 일반회계에서 정기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시 일반재원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조례안 중에서 출연금의 지원기간 등 관리·운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
------	----

제출년월일 : 2006. 11.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법인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일반회계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
- 나.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 다. 기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 (안 부칙제2항)
- 라.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기협의 완료
- 다. 입법예고 : 2005. 4. 22 ~ 5. 12 실시결과 의견없음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평창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재단법인평창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결산보고서 요구)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
- ③(다른조례의 폐지)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